

[별표 6] <개정 2003.3.26>

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(제15조제3항관련)

구분	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(하한-상한)	적용대상자산(다음에 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해당 업종에 사용되는 자산)	
		대분류	중분류
1	5년 (4년~6년)	농업, 수렵업 및 임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·소매 및 소비 자용품 수리업 운수, 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,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	01. 농업, 수렵업 및 관련서비스업, 다 만, 과수의 경우는 구분 5(15 년~25년)를 적용한다. 02. 임업, 벌목 및 관련서비스업 10. 석탄광업 11. 원유, 천연가스채취 및 관련서비스 업 22. 출판,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26.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(26129. 기 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중 액 정표시장치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정밀평판유리의 제조업과 브라운 관용 밸브유리의 제조업에 한한 다) 32. 전자부품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45. 건설업 50. 자동차판매·수리 및 차량연료 소매 업 51. 도매 및 상품 중개업 52. 소매 및 소비용품 수선업(자동차 제외) 60.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운송업. 다 만, 도시간 철도운송업(601) 및 구역내 철도운송업(60211)은 구 분 5(15년~25년)를 적용한다. 65. 금융업 66. 보험 및 연금업 67.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70. 부동산업 71.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72.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관 련업 73. 연구 및 개발업

2	8년 (6년~10년)	공공행정,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기타 공공,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제조업	74. 기타 사업관련 서비스업 75. 공공행정,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80. 교육서비스업 85.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90.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91. 회원단체 92. 오락, 문화 및 운동 관련산업 93. 기타 서비스업 95. 가사서비스업 99.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18. 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23. 코크스, 석유 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24.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. 다만, 살균, 살충제 및 기타 농업용 화학제품 제조업(2421)과 의약품, 의료용 화학물 및 생약제제 제조업(2433)은 구분 1(4년~6년)을 적용한다.
		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, 창고 및 통신업 어업 광업 제조업	55. 숙박 및 음식점업 63. 여행알선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 64. 통신업 05. 일반어업, 양식업 및 관련서비스업 12. 우라늄 및 토륨 광업 13. 금속광업 14. 기타 광업 및 채석업 15. 음식료품 제조업 17. 석유제품 제조업. 다만, 섬유표백, 염색 및 가공업(1712)은 구분 2(6년~10년)를 적용한다. 19. 가죽, 가방, 마구류 및 신발제조업. 다만, 가죽제조업(1712)은 구분 2(6년~10년)를 적용한다. 20.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(가구 제외) 21. 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5.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
3	10년 (8년~12년)		

			26.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(액정표시 장치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정밀 평판유리의 제조업과 브라운관용 벌브유리의 제조업을 제외한다) 27. 제1차 금속산업 28. 조립금속제품 제조업(기계 및 장비 제외) 29.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0. 사무, 계산 및 회계용 기계 제조업. 다만,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 제조업(3001)은 구분 1(4년~6년)을 적용한다. 31.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기기계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33.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34.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5.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6. 가구 및 기타 제조업 37. 재생재료 가공 처리업 16. 담배제조업 61. 수상 운송업. 다만, 외항화물운송업(61104)은 구분 5(15년~25년)를 적용한다. 62. 항공 운송업 40. 전기, 가스 및 증기업. 다만,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가스제조 및 공급업(40209)은 구분 3(8년~12년)을 적용한다. 41. 수도사업
4	12년 (9년~15년)	제조업 운수, 창고 및 통신업	
5	20년 (15년~25년)	전기, 가스 및 수도사업	

1. 이 내용연수표는 별표 3 및 별표 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을 제외한 모든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적용한다.
2.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사용비율이 큰 업종의 기준 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.